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지 방 교 육 행 정 기 관 및 공 립 의 각 급
학 교 에 두 는 국 가 공 무 원 의 정 원 에
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,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의 교원 907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1,977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,

초·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216명, 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882명을 각각 감축하되,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등순회교사 정원 59명을 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2. 4. ~ 2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,397”을 “2,538”로 하고, 교사 계 “2,377”을 “2,518”로 하며, 중등순회교사 “122”를 “63”으로, 특수교육순회교사 “1,427”을 “1,627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(제2조제2항 관련)

총계	345,370
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14,811
원장	556
원감	984
교사	13,271
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149,819
교장	6,034
교감	6,177
교사	137,608
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143,141
교장	3,875
교감	3,660
교사	135,606
특수학교 계	16,737
교장	97
교감	122
교사 (유치원 ·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)	16,518
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	20,862

보건교사	8,844
영양교사	6,624
사서교사	1,558
전문상담교사	3,836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(제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,397</u>	<u>2,538</u>	+141
교사 계	<u>2,377</u>	<u>2,518</u>	+141
중등순회교사	<u>122</u>	<u>63</u>	-59
·	·	·	
특수교육순회교사	<u>1,427</u>	<u>1,627</u>	+200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18